

# 대학원 심리학과(기초심리학 및 응용심리학전공)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 03. 01.  
1차 개정 2014. 11. 07.  
2차 개정 2016. 03. 21.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심리학과(이하 “학과”라고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 제1절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제3조(제출자격시험)** ①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 이라 한다)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② 자격시험은 학위과정별로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 수료학점의 2/3 (16학점)이상을 기 취득한 자
2. 박사학위과정 : 수료학점의 2/3 (24학점)이상을 기 취득한 자

**제4조(응시절차)** 학위청구논문(이하 “논문”이라 한다)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과목)** ①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시험과목은 전공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자격시험의 교과목은 학과에서 정하되,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하며, 기초 심리학 전공의 경우 응용 심리학 교과목 1과목 및 심리학 연구방법론 교과목(심리 측정학, 심리학사 및 체계, 고급심리통계, 실험설계법 I, 상관과 회귀분석, 실험설계법 II, 중다변인분석법, 연구논문지도, 고급심리통계세미나, 심리학 교수원리와 방법) 1과목을 반드시 포함하며, 응용 심리학 전공의 경우 기초 심리학 교과

목 1과목 및 심리학 연구방법론 교과목 1과목을 반드시 포함한다.

③ (삭제 2016.03.21.)

④ 시험의 결과는 1년간 학과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출제기준)** 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 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7조(출제위원 및 채점위원)** ① 출제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위촉한다.

②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8조(합격기준)** ① 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삭제 2016.03.21.)

③ 불합격된 과목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계열학사위원장은 자격시험의 합격결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절 학위청구논문의 작성 및 제출

**제10조(논문의 작성)** ①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어·독일어·프랑스어·중국어·일본어 중 1종의 외국어로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논문의 작성요령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의 1(논문지도위원회)** ① 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 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4.11.07.)

②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07.)

③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신설 2014.11.07.)

④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예정 1학기 이전에

논문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  
(신설 2014.11.07.)

- ⑤ 논문지도위원회에서 논문계획이 통과된 학생은 “논문계획승인서”를 논문접수 시 함께 제출한다. (신설 2014.11.07.)

**제11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2조(논문 제출기간)**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수료 후 5년 이내에, 박사학위청구 논문은 수료 후 7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 제출기한을 넘겨 대학원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학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

- ② 의무군복무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3조(논문 제출 및 접수)** ① 논문을 심사받고자 하는 자는 석사학위청구논문은 3부를, 박사학위청구논문은 5부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주임교수 및 계열학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논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대학원장은 1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대학원장은 논문의 접수가 부결되었을 때에는 제출서류와 함께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논문심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논문심사료)** 논문을 제출할 때에는 따로 정하는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07.)

1. TOEIC 700점 이상 (개정 2016.03.21.)
2. TOEIC-S 6(130~150)점 이상 (신설 2016.03.21.)
3. TOEFL(CBT) 200점 이상 (신설 2016.03.21.)
4. TOEFL(PBT) 530점 이상 (신설 2016.03.21.)
5. TOEFL(iBT) 82점 이상 (개정 2016.03.21.)

6. TEPS 590점 이상 (개정 2016.03.21.)

7. 국제언어교육센터 영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신설 2016.03.21.)

② 본교 심리학과 석사과정(기초심리학 및 응용심리학 전공)에서 외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하여 동일학과, 동일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03.21.)

**제16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① 박사학위과정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전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1. 주저자만 인정한다.

2. 국내전문학술지(등재) 2편 이상 게재해야 하며, 박사학위 청구논문과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박사학위청구논문과의 관련성 여부의 판단은 “지도교수”에 위임한다.

3.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게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최종학위논문 제출일 전 게재될 경우에만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4. 등록된 국내 특허와 국제 특허도 별표와 같이 실적으로 인정한다.

5. 학위청구논문 제출일을 포함하여 박사학위 과정에서 게재한 실적만 인정한다.

**제17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의 1과 제16조는 2013년 이전의 입학생 모두에게 소급적용한다.

## 부 칙 (2014.11.0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제16조는 2015년도 이전 입학생 모두에게 소급적용한다.

## 부 칙 (2016.03.21.)

이 시행세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